2023년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3년 6월 19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공고마감일('23.7.14) 기준 다음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소 재 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소상공인
 - ② (지원연령)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 의해 정의된 자* *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
 - · (우대사항)* 디지털 취약 업종(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 디지털 취약 **연령**(만 50세 이상)
 - * 근거 :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 나. 자격요건 : 공고마감일(23.7.14) 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지 원 제 외

- 1)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중인 자(붙임)
- 2) 휴·폐업 중인 자
- 3)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 수혜(예정) 업체
 -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 4)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수혜업체
- 5)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가 아닌 자(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다. 지원규모: 125명
- 라. 사업기간 : 선정일(8월 초 예정) ~ '24년 하반기(사후관리)
- 마. 지원내용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교육, 전문가 협업을 통한 컨설팅 및 비용지원

지원항목	내 용
교 육	디지털 역량 수준별 교육 제공 (기초교육/심화교육)
컨설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최대 4회) 제공
비용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솔루션 이행 비용(실비) 최대 3백만원 지원(VAT 신청업체 부담)

2. 주요 지원내용

가. 지원절차

교육 3개모집 예비진단 보고 전설팅 과제이행 및 점검 (최대 3백만원 지원) 하반기 우수기업 선발 및 지원 (13개 업체, 최대 1백만원 지원)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정착을 목표로, 업체의 상황에 맞춤화 된 패키지 형태의 일괄 지원 실시

-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
 - * 출처: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 나. 컨설팅에 따른 과제 이행 지원항목 예시

지 원 항 목	솔루션 이행형	항목			
온라인 진출	 배달앱 입점 및 활성화 제반 비용 예) 중개이용료, 결제수수료, 배달이용료, 광고비용 등 스마트스토어 입점 및 활성화 제반 비용 예)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매출연동 수수료, 유입 수수료 등 오픈마켓 입점 및 활성화 제반 비용 예) 판매수수료, 배송비 결제 수수료,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배달용기 디자인·제작 비용 • Bl(Brand Identity) / Cl(Corporate Identity) 디자인 ○ 온라인 배너 광고 				
온라인 마케팅	 BI(Brand Identity) /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 온라인 홍보용 사진·영상 컨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제작·송출 비용 (라이브 매출 연동 수수료 포함) 	온라인 배너 광고 블로그 마케팅 쿠폰 프로모션 온라인 판매를 위한 밀키트 제작 앱·메인 노출 마케팅			
인프라 구축	• 온라인 쇼핑몰 구축 • 자체 홈페이지 구축	•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가맹 수수료			
디지털 환경구축	• 원가관리, 인력관리, 재무·회계관리, 고객관리를 •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권				
기 타	•기타 PM 및 컨설턴트가 인정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항목			

지원항목 관련 유의사항

- 1) 자산취득성 물품 구매비용 지원 불가 예)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기기, 카메라 등
- 2) 판매에 수반되는 수수료 등은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배달앱 수수료는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 소속 플랫폼에 한하여 지원
- 3) 이행항목 구매처는 총 3개 이하로 제한
- 4) 모든 품목은 이행 **완료** 확인 후 지급
- 5) 부가가치세(VAT) 신청업체 부담
- 6) 구매 시 전자세금계산서(품목명 표시) 또는 신용카드 결제 전표 제출 필수
- 7) 하반기 솔루션 이행비용 지급 신청 기한 : ~2023년 11월 15일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6. 26.(월) 10:00 ~ 7.14.(금) 17:00까지 (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구 분	신 청 방 법
회원가입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 -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수)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 메뉴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클릭 - 공고 확인 후하단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 클릭
신청내역 확인	로그인 - 우측상단 본인 이름(OOO 님)으로 마우스 커서 이동 - '마이페이지' 클릭 - '신청내역' 탭 클릭 - 신청내역 확인
신청서 수정	신청내역 페이지 - 사업분류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클릭 - 신청서 수정 후 하단 '수정하기' 클릭

다.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구 비 서 류	비고			
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화면 내 작성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 출력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⑥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 (예시: 건강보험서류(비밀번호 12345678).pdf)

4. 평가·선정방법

- 가. 선정절차 : 2단계 평가(서류심사 →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나. 평가방법
 - ① (서류심사) 지원대상 확인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접수 또는 반려 처리(2배수 선발)
 - · 평가방법: **요건심사**(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검토) + 정량평가(디지털 취약 업종·연령 여부)

② (평가위원회 심의) 내·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발

· 평가방법: 정량평가 점수(1단계 서류심사 결과) + 정성평가(이래 평가항목 고려)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지원동기 및 의지 (15)	· 대표자의 문제의식 및 디지털 전환 의지 · 지원사업 필요성
제품 역량 (25)	· 제품의 시장성 · 차별성 · 온라인 플랫폼 진출 가능성
사업수행역량 (25)	·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의지 및 역량 · 사업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15)	· 지속가능성 · 성과창출 기대효과

다. 선정통지: 선정업체 개별 문자(SMS) 통지(8월 초)

5. 향후 일정

가. 선발결과 통지: 8월 초

나. 사업수행시작일: 8월

다. 교육, 경영진단 및 컨설팅 : 8월 ~ 10월

라. 비용지원 : 11월

마. 하반기 우수기업 선발: 2024년 4월 ~ 5월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6. 유의사항

- ①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원신청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에서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 ②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를 마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③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본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연락불능 등의 경우 선정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⑤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⑥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브로커 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⑧ 문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붙임 1. 재보증 제한업종 1부.
 - 2.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3.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4.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5.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붙임1]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도박 및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관련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건전 문화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관련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업 체 명						사입	古자등록 ¹	번호			(□개인 □법인)
대 표 자						ō.	년락처(HI	P)				
생년월일							개업일지	ŀ				
업 종							주요품목	<u>1</u>				
사업장주소						시	업장(TE	L)				
5U 5 0U		2020	년			202	21년			20)22년	
매 출 액			백만원				백만	원			백만원	
종업원수			명				ı	명			명	
순 수 입			현 재						희 망			
	(월평	평균)			원		(월	평균)			원	
점포입지	□아파트	단지 []주택가 	□도로번	<u> </u>	기타	()		점포면적			m [*]
소유구분	□임차		□자가						기타수익			
디지털 역량 (본인이 생각하는)	□ 디지털 입문								□ 디지털	심:	화	
지원필요분야	□ 온라인 플랫폼 □ 디지털 경영관리 □				콘텐츠	. 제작	□S	NS 메팅] 인프라 구축		
희망 교육 (택2)		램활화	□생㎞	에기 제작		블로그	. 활성화	□ 두	유트 활성화] 기타	
오프라인 교육시 가능 요일	□ 월	□화	ㅁ수	ㅁ목		금	가능 시	간대	□ 오전		□ 오후	
지원동기 및 의지												
사업 소개 (제품 강점)												

사업 수행역량						
기대효과						
				i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중소기업 지원	정보 수집·이용/제: 사업 통합관리시 <i>=</i>	└템 정보 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등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2) 상시종업원수		험 사업장	가입자명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		
모든 서류를 빠	짐없이 제출하였	으며 필수	서류 누락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힘	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u> 신청인 :</u>	<u>(०1)</u>	
서울신용보증	:재단 귀중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담, 컨설팅, 경영지원, 서울시 수탁·대행사업 등과 관련하여 재단이 본인의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조회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	적	■ 경영지원 등 지원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경영지원 등 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통계업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및 사업안내 ■ 기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보유·이용기간	<u>'</u>	해당 서울시 수탁·대행사업 지원종료 후 5년간 ※ 위 지원종료일이란 최종 컨설팅·교육·비용지급일 등 지원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거나 지원의 포기·철회 등 지원이 취소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서울시 수탁·대행사업 등 경영지원업무 지원관계의 설정 및 이행을 위한 필수 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서울시 수탁·대행사업 등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항목	개인 및 기업체 정보	필수적 정보 ■ 일반개인 정보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기 업 체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제출한 신청서, 부가서류 및 경영지원 업무수행(컨설팅・교육 등) 중 수집한 정보 선택적 정보 ■ 자격증, 수상경력 등 사업 가점 사항 위 개인 및 기업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제공 받는 목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성과분석 등)
	보유·이용 및 조회 효력 기간	■ 해당 서울시 수탁·대행사업 지원종료 후 5년간 (수탁 및 협력기관은 협약/계약 종료일) ■ 조회 동의 효력은 지원사업 종료일
1. 서울특별시, 자치구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서울시 수탁·대행사업 등 경영지원업무 지원관계의 설정 및 이행을 위한 필수 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서울시 수탁·대행사업 등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필수적 정보 ■ 일반개인 정보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기 업 체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4.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력기관	개인 및 기업체 정보	■ 제출한 신청서, 부가서류 및 경영지원 업무수행(컨설팅 교육 등) 중 수집한 정보 선택적 정보 ■ 자격증, 수상경력 등 사업 가점 사항 위 개인 및 기업체 정보를 좌측 기관에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관련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 임을 확인합니다.	며, 동의한	내용이	사실
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일
	ZUZ3 C	Έ	뒫

업 체 명			대표자			(인)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모저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기업진홍공단	세공 양곡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③기술보증기금	보유・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④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홍원 등 창업진홍원 기업 유통센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 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한국벤처투자(주) ③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동의 여부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5]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지원대상 중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래의 소상공인 조건(상시근로자 + 평균매출액)을 모두 충족하며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 균 매 출 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에 해당		

2. 왜 지원대상이 '중장년'인가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습득 용이성이 낮은 중장년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3.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을 통해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온라인 접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 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위해. 별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 되나요?

-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대표자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 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7.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8. 개명하여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관리하는 사이렌24(1577-1006)에서 개명된 성함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9. 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역량 수준별 교육(기초-심화), 최대 4회의 전문가 컨설팅,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이행비용(최대 3백만원) 지급, 사후관리 등 밀착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화을 지원합니다.

10. 디지털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교육은 기초, 심화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기초) 소상공인이카데미(edu.seoulsbdc.or.kr) '디지털전환 교육 전용관'중 PM이 안내하는 업체 맞춤형 과정을 1개 이상 이수합니다.
 - (심화) 오프라인 실습 교육이 개최됩니다. 향후 심화 교육에 대한 일정은 합격 이후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11. 예비진단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예비진단을 위한 현장 방문이 진행됩니다.
 - 영업점의 디지털 전환 총괄 관리자(PM, Project Manager)가 현장을 방문 하여 업체 환경 및 요구사항 파악 후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 업체의 특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인 '진단 컨설턴트'를 선정합니다.

12.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진단·처방 컨설팅(1회) -〉 지도 컨설팅(2회) -〉 이행점검 컨설팅(1회)로 진행됩니다.

13. 이행비용 지원은 언제, 어떻게 지급 되나요?

- 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이행 비용으로,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이행점검 컨설팅 이후 최종 결과보고서상 대표자가 구매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후 대표자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좌이체 이외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
- 지원금 지급결정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실제 지급까지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대표 은행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타인계좌로 받을 수 없나요?

-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증빙자료와 동의서류 작성 후 지급 가능합니다.

15. 신청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② 민원증명 메뉴 '사업자등록증명' 클릭
-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 ④ 발급신청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② 민원증명 메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클릭

홈택스 발급

-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 ④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⑤ 필수입력/선택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 세무서, 병원, 마트, 전철역 등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정부24 발급 (공동인증서

② 자주찾는 검색창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검색 - [발급] 클릭

필요) ③ 회원 신

- ③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④ 사업자등록번호 및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3.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방법

-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u>www.4insure.or.kr</u>) 접속
- ② 사업장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③ 상단 '증명서 발급'메뉴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선택
- ④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안내사항 '확인' 선택
- ⑤ 사업장 가입자명부 체크 후 [신청] 클릭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② 민원요기요 개인민원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간편인증/공동·금융 인증서)
- ④ 조회조건 선택 후 [조회] 클릭
- ⑤ [프린트 발급] 버튼을 눌러 PDF파일로 저장 ([팩스전송] 버튼을 눌러 팩스 전송 가능)

첨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17.10.17 개정)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1-4-16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6. 미급국 당돌세품 세포립 9. 1차 금속 제조업	C23		
	C24 C25	120억원 이하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Α		
19. 광업	В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Н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 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